

국제금융소비자학회

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체계

<목차>

1. 서론
2. 국내외 금융소비자 피해
3.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
4. 쌍봉형 체계 도입
5. 결론

2016년 11월 5일

윤석현(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)

1. 서론

-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성 지속
 - 세계경제포럼(WEF)은 2016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26위,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0위로 평가; 금융시장 성숙도는 2015년의 87위보다 7위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
 - 한편 국내 금융산업 수익성이 2005년 이후 줄 곳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환기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금융중개기능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

- 한국금융의 성숙도(경쟁력)가 낮은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
 - ① 정부가 계속해서 금융을 상위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
 - * 예로, 창조경제 지원 위한 기술금융,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계 부채 확대
 - ② 낙하산 인사와 정·관치금융 등 금융개입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재가 금융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 - ③ 지속되는 금융위기와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음

- 본 발표는 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가 향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함
 - 과거 국내에서 건전성감독에 편향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해를 금융소비자의 이해에 우선
 -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는 금융기관 건전성·수익성 내지 금융산업의 성장·발전을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

- 한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는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관계 존재
 - 금융회사 수익이 금융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해 창출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성과지표 내지 임직원 보수체계가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 충족보다 판매실적에 연계
 - 그래서 성과 만능주의, 실적 중시 유인구조가 공격적 금융상품 판매행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

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도상 여러 가지 법적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

이들에게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

- 금융회사의 판매위주 영업 하에서 위험을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거나 심지어 고객 스스로 민원제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(배현기, 2014)
- 그간 감독당국이나 자율규제기구에서 처리되는 민원 비율은 미미했으며, 법원판결 없이는 고객 손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
-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노력을 선도해가는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역할 강화가 중요

-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은 그간의 공급자 위주 경영에서 수요자 위주 경영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리드할 필요

- '금융산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'에서 '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'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(정홍주, 2014)
- 향후 국내 금융산업에서 소비자들 신뢰 없이는 금융의 베이스, 즉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가 자라지 않게 되어 금융 산업 발전에 치명적
- 구체적으로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을 이해하고,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인하를 도모하며,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창출 및 질적 수준 제고하여 선택폭을 확대하는 등 '광의의 소비자보호'를 위해 금융감독 역량 제고 필요(FCA, 2013)

-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

- 이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자율화 정착이 시급하고
- 수요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절실
-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들 두 가지를 위한 핵심수단이며 출발점

- 본고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는데, 구체적으로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방안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방안을 논의함

2. 국내외 금융소비자 피해

(1) 국내 금융사고 사례

① 2011년에 드러난 저축은행 부실사태

- * 2006.5월, 8-8 클럽에 대해, 동일인 여신한도를 80억원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% 미만으로 완화
- * 저축은행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여 투자자 피해 대폭 확대

② 2008년 전후의 KIKO 사태

- * 파생상품의 투기성을 탐했던 일부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었겠지만, 금융회사가 고객관계를 무시하고 단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고객(금융소비자)에게 큰 위험을 부담시킨 것이나 투기성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감독당국의 책임도 작지 않았음
- *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또는 도산 위기에 직면, 201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피해 추산액 4조원
- * 대법원은 KIKO 상품이 환헤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으나, 은행이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나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함

③ 2012년의 동양사태

- * 2005년 이후 증권사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상품 허용
- * 2012.7월 금감원은 금융위에 증권사의 계열사 회사채/CP 판매제한을 건의 ⇒ 금융위 늦장 대응(2013.4월 규정공포, 2013.10월 시행)은 산업정책이 감독(소비자보호)정책을 압도한 좋은 예

④ 2014년 초 카드 3사의 정보유출사건

- * 고객 동의 없이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간 정보공유 무제한 허용했던 상황에서 전산보안, 대출모집 등 필수 영업부문 무분별 외주가 화를 불렀음
- * 그 후에도 네이트, 국민은행, 옥션 및 인터파크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
- * 해외 대비 국내 금융회사들의 보안용 전산 투자 부족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전력투구

⑤ 그 밖에 CD금리 담합 의혹, LIG건설 사기 CP 발행, 금융기관의 ELS, ELW 불완전판매, 우리은행 파이씨티개발 PF 투자상품 불완전판매

⑥ 날로 수법이 교활해지는 피싱과 파밍

- 두 가지 유형

① Top-down 의사결정 ⇒ 관치금융 지원 ⇒ 부실화 내지 쏠림현상 ⇒ 위험 창출 ⇒ 금융회사 부담 ⇒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

② Top-down 의사결정 ⇒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 역할 약화 ⇒ 비리·부정에 대한 응징 약화 ⇒ (사이버) 금융사기 창궐 ⇒ 소비자 피해

(2) 해외의 금융사고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,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시장위험과 운영위험이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과 고객 간 소송이 급증

① 미국 SEC의 Goldman Sachs 기소(2010.4.28)

*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주택관련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 대한 사기혐의로 Goldman Sachs를 기소

* SEC가 Goldman Sachs를 기소한 것은 크게 3가지 혐의 때문인데, 핵심은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재하면서 매도자 측에 유리하게 거래구조를 만들었다는 것

* 이에 대해 Goldman Sachs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SEC 지적사항들이 금융관행에 불과하다는 주장

* 한국의 경우도, 전술한 KIKO 사태에서, 금융기관이 중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

② 영국 로이즈뱅크(연합뉴스, 2011.8.4)

* Lloyds뱅크그룹을 비롯 Barclays, RBS, HSBC 등 영국 은행들은 그동안 지급보장보험(PPI) 상품을 판매

· PPI는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실직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

- 으로, 은행들이 자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의무 가입을 요구
- * 그러나 은행들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등에까지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5년간 관련 민원이 11만건을 초과
 - * 감독당국은 조사를 거쳐 은행들이 과거 판매한 상품에 대해 보험료는 물론 이자 등을 환불하고 심지어 보상금까지 지급토록 했는데, 이에 영국 은행연합회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
 - * 2005년 이후 보험 가입자가 1천600만명에 달하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보상금액이 50억파운드 초과

③ 미국 JP모건체이스은행

- * 2013.10월 미국 JPMorganChase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담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국 연방주택금융청(FHFA)에 51억 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
- * JPMorganChase은행은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에 130억달러 벌금 납부를 잠정 합의

④ BOA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(MBS) 판매

- * 2014.8월 Bank of America는 같은 문제로 미국 법무부와 166.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타협
- * 그러나 이 타협안이 형사책임을 면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

⑤ 미국 Wells Fargo Bank의 유령계좌

- * 미국 최대은행 Wells Fargo은행이 고객동의 없이 예금 및 카드 유령계좌 200만개를 만들어 실적 부풀리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
- * Wells Fargo는 직원들에게 계좌개설 할당량을 부과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짐
- * 2016.9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은 Wells Fargo가 1억8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후, 2016.10.12일 John Stumpf 회장이 사임

⑥ 최근 드러난 독일 Deutsche Bank의 MBS 불완전 판매

- * 도이치뱅크는 2005~2007년 중에 위험증권을 안전한 증권인 양 포장해서 판매, 미 법무부가 140억달러 과징금 부과할 것으로 예상
- * 도이치뱅크 주가는 작년 11월 28유로에서 금년 10.10일 10유로 안팎까지 하락하면서 은행의 상환능력이 위협받게 되어 독일정부에 긴급 구

제금융 요청 가능성 있음

(3) 시사점

-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 신뢰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고 따라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
 - 향후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데, 감독당국의 역할이 지지부진할 경우 큰 부담이 소비자 몫으로 부과될 것임
- 핀테크 등 기술발전과 금융산업 경쟁심화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독립적 위상을 지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감독기구 역할 중요성 확대
 - 기술발전에 따른 양극화, 과당경쟁 등이 금융회사의 고위험·고수익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키울 가능성
 - 최근 국내 금융권 수익성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가 우려되는 상황
 - 금융회사들의 고위험·고수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감독의 중요성 증가
- 감독기구의 중재역할
 - 핀테크 활성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정보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, 금융분야 전문성을 지닌 법원 외 금융 옴버즈만(ombudsman)과 분쟁해결기구(ADR: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의 중재역할 활성화 추세
- ADR의 편익은 다음과 같음(Thomas and Frizon, 2012)
 - 금융소비자: 금전적·시간적 비용 절약,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 증대
 - 금융회사: 금융상품판매 가능성 증대, 분쟁해결 비용 최소화
 - 국가: 소송비용 최소화, ADR의 피드백을 통한 감독당국 규제개선

3.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

(1) 금융감독체계 정립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선결조건

-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피해는 금융감독이 정부정책을 지원하느라 위험관리에 소홀한 가운데 부실을 조기 통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쏠림현상으로 확대되면서 발생
 - 감독기구 수준에서 금융기관 건전성을 소비자 보호에 우선시
 -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
-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행위규제 정착을 위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
 - 그러나 현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합의 부재로 금소법안만 단독으로 입법 추진

(2)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방향

- 2013.7.4.일 관련 분야 학자/전문가 143명이 발표한 공동선언은 아래 세 가지를 패키지로 제안
 -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 간 조직분리
 - 건전성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간 조직분리
 - 금융안정협의회(가칭) 법제화

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조직 분리

- 정부의 경기부양책 내지 금융산업정책(액셀)이 금융위험을 수반하는데, 이 때 금융감독정책(브레이크)이 금융산업정책에 압도되어 위험을 조기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확대되면서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귀결
- 따라서 양자를 조직 분리하여
 -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보내 국제금융정책과 통합 추진토록 하고
 -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(checks and Balances) 기능을 수행토록 독립된 조직으로 편제
- 다만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공적기구로 설립
 - 학계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다수가 민간 공적기구 지지

- 제재 등 행정처분은 행정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, 감독기구 설치법에 명시적 근거 규정을 두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 다수

② 금융소비자보호기능과 건전성감독기능 간 조직 분리

- 과거 한국에서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중시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처리
 - 그래서 양자 간 이해상충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 조직 분리가 최선인데 조직분리방안으로 소봉형과 쌍봉형의 두 가지

<표 1>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유형 구분

	통합형/단봉형	소봉형	쌍봉형
분리의 내용	통합	소비자보호 기능만 분리	행위규제 전체를 분리
감독기구의 목표	복합목표	소비자보호는 단일 목표, 그 외는 복합목표	기구별로 단일 목표
감독목표	내부조정	각 기구 내부조정	상위 협의기구 신설
상충 시 조정		또는 금융위의 조정	(예: 금융안정협의회)
대상 금융기관	모든 피감기관	기구별로 모든 피감기관	기능별로 모든 피감기관

자료: 윤석헌(2014a)

- 통합형과 쌍봉형의 비교

<표 2> 통합형과 쌍봉형 단점 비교

구분	단점
통합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목적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사후적으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결국 소비자보호 약화를 초래 • 금융시장 규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절실 •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유니버설 बैं킹이 아닌 상황에서 통합형 감독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기도 어려움 • 시스템적 고려가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을 망라해야 하므로 목적별 규제감독이 오히려 효과적(McCoy, 2014) • 비대화되는 통합감독기구
쌍봉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위기 이후 중복 수검비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비용부담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큼(McCoy, 2014) •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목적이 상이한 두 개의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• 두 기구 간 적절한 소통채널 없으면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음 • 금융업이 과도하게 위험회피적이 될 수 있음 • 새로운 규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할 수 있음

- 소봉형과 쌍봉형의 업무배분방식

- 소봉형 체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머지 기능과 분리
- 쌍봉형 체제는 행위규제(시장감독 포함)기능을 건전성감독기능과 분리
 - * 건전성감독기구: 금융기관 자기자본규제, 자산건전성 규제,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규제, 경영실태 평가, 적기시정조치 등
 - * 행위규제기구: 시장조사, 회계제도, 증권발행 공시 규제, 정기 및 수시 공시 규제, 신용평가회사 감독 등 시장규제업무와 불공정거래 방지, 영업행위규제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모두 포함

- 소봉형과 쌍봉형 장단점 비교

<표 3>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체계 유형별 장단점

	장점	단점
소봉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보호기능의 조직분리는 소비자 피해 투명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에 기여 - 분리작업이 쌍봉형 보다 현실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봉형 위상으로는 건전성감독 기구 견제·균형이 어려움 - 소비자보호와 여타 행위규제 간 분리가 개념적으로 어려움
쌍봉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위규제 개념은,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서처럼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규제 간 이해상충 발생 시 판단기준으로 유용하여, 이를 소비자보호와 통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도움 - 소비자보호만 대상으로 하기보다 금융회사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행위규제가 규제목적상 더 효과적 - 향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건원과 대등한 권한·위상을 지니는 기구로 발전 -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금시원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 - 양자간 이해상충의 사전적 조율이 어려울 수 있음

자료: 윤석현(2014a)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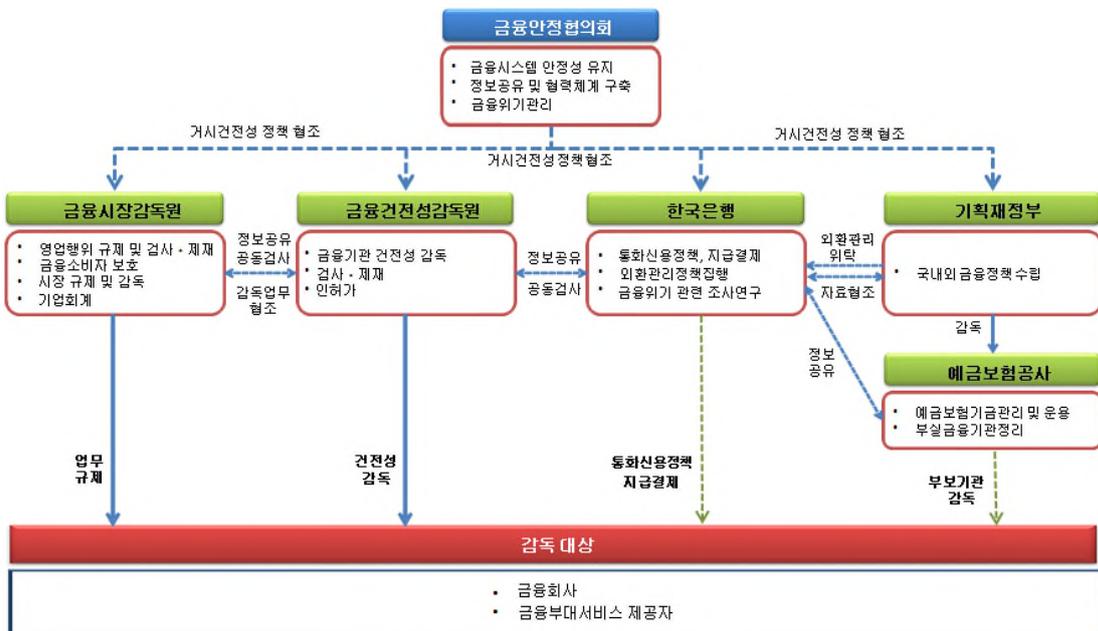
- G20 고위층 원칙(OECD, 2011)은 전담/비전담 불구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책임지는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책무 이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, 다른 금융감독기구 및 감독부서와 협력체계 확립하도록 요구

③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

- 그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통해 잘 알려졌듯이, 현재의 서별관회의는 법적 기구가 아니고 따라서 구속력이 없음
 - 따라서 구속력 있는 기구를 법제화하여 감독유관기관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정책공조와 업무협력을 유도하고 업무역량을 확대
 - 이 기구는 향후 관치금융을 대신하여 한국금융을 이끌어갈 차세대 정책결정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
- 신설 금융안정협의회의의 주요 역할
 - 감독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
 -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위기관리
 -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
- 해외사례
 - 미국의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, 영국의 Financial Policy Committee, 호주의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

(3) 개념도

<그림 1>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개념도



4. 쌍봉형 체계 도입¹⁾

(1) 금융건전성감독원(금건원)

- 신설 금건원을 민간 공적기구(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)형태로 설립
 - 금건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이 주 업무이므로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민간 공적기구로 설립함
 - 감독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①금융건전성감독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제안권 ②관련 감독규정 제·개정권 및 ③관련 법령 제·개정시 정부 부처와 사전협의권 부여

- 주요 업무
 -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,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
 - 금융회사의 설립, 경영, 합병, 전환, 영업양수도 등의 인·허가

- 지배구조
 - 금건원 내부 최상위에 합의제 의결기구로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(금건위) 설치
 -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금건원장(금건위 위원장 겸임) 임명, 대통령은 금건원장, 금건원 수석부원장, 금시원 수석부원장 및 국회 추천 받는 4인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금건위 위원을 임명; 연 1회 이상 국회 업무 보고, 감사원 감사 등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통하여 공적 민간기구의 책임성 문제 최소화
 - 감사위원회의 독립성: 금건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되, 기재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과 국회가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, 단 금건위 위원 및 금건원 임직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

- 예산
 - 금건원의 예산은 금건위 의결로 확정
 - 금건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금건원에 분담금을 납부하되,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1) 이 부분은 윤석현 외(2016)의 “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” 참조

(2) 금융시장감독원(금시원)

- 행위규제기구 또한 금건원과 병렬 지위, 대등한 위상 및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간 공적기구로 설립
 - ㉠정부·국회에 대한 관련 법령 제·개정 제안권, ㉡행위규제 관련 규정 제·개정권, ㉢관련 법령 제·개정시 정부부처와 사전협의권 부여

-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행위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
 -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이에 따른 검사·제재
 - 자본시장의 관리·감독 및 감시, 불공정 거래 조사
 -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
 - 금융소비자 보호,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

- 지배구조
 - 금시원 내부 최상위에 합의제 의결기구로 금융시장감독위원회(금시위)를 설치하고,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기능 포괄 승계
 -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금시원장(금시위 위원장 겸임) 임명; 대통령은 금시원장, 금시원 수석부원장, 금건원 수석부원장 및 국회 추천 받는 6인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금시위 위원을 임명; 연 1회 이상 국회 업무 보고, 감사원 감사 등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통하여 공적 민간기구의 책임성 문제 최소화
 - 감사위원회의 독립성: 금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되, 기재부장관, 한은총재, 금건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과 국회가 정당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, 단 금시위 위원 및 금시원 임직원의 감사위원 겸직 금지

- 예산
 - 금시원의 예산은 금시위 의결로 확정
 - 금시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분담금을 금시원에 납부하되,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- 금융분쟁조정기구
 -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분쟁조정기구를 금시원 산

하에 독립된 기구로 설치

- 독립된 분쟁조정기구는 기존의 금융민원센터 기능,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금융소비자 교육 업무 등을 수행
- 분쟁조정기구 내에 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분쟁조정관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
 - *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,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, 분쟁조정관 임명 제청, 분쟁조정기구 업무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심의·의결
 - * 개별 분쟁조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-20인의 상근 분쟁조정관이 담당하고, 이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 최종 결정; 선임 분쟁조정관이 위원장

-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

- 금융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그 밖의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거나 위반행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기구(금시원)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하며, 익명 신고도 허용
- 금융감독기구는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,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통지
-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금지, 면책요건 및 포상 등 규정

(3) 협력체계 구축 및 금융안정협의회(가칭) 법제화

① 감독기구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

- 양해각서

- 중복 업무영역을 '공통규제관심사'로 규정하고 '기본적 조정방안' 마련
 - * 예: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간 상충문제, 정보의 수집과 공시 문제, 법령과 규정의 해석상 차이 등을 조정
- 필요시 공통규제관심사 중 주된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'주책임감독기구'를 선정하되, 이 선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금융안정협의회가 결정
- 공통규제관심사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정해둔 '기본적 조정방안'을 따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

- 자신의 역할이 상대방 목표달성에 부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
- 상대방 감독기구가 적격기능 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구해야 함
- 두 감독기구는 기능 조정을 위해 분기 1회 정례협의회 개최

※ <참고> 영국 FCA와 PRA 간 체결된 MoU(2013.4)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:

- FCA와 PRA의 역할과 책임
- 정보공유 일반 원칙
- 비밀보장
- 정책과 규정의 제정
- 금융회사(firms) 인가(authorisation) 및 개인(individuals)에 대한 허가(approval)
- 2원적 규제 대상 금융회사의 감독
- 공적 규제 프로세스 및 그 집행 등등

- 금융안정협의회의 조정

- 감독기구 간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할 경우 우선적으로 양해각서 및 기본적 조정방안을 따르도록 함
-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감독기구 간 자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책임감독기구가 이를 금융안정협의회에 부의하여 그 결정에 따름
- 주책임감독기구가 미정인 사안은 금융안정협의회에 부의하여 결정

- 금건위의 거부권

- 금건위는 공통규제관심사가 아닌 고유업무 중 특정 안전에 대한 금시위의 협의요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
- 다만 이를 위해 금융안정협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함

- 금융업의 인·허가

-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건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하여야 함
- 다만 금시원 소관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시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인가 또는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함
- 주책임감독기구란 금건원 또는 금시원 중 해당 피규제업무에 대한 주

된 규제·감독권한을 가진 감독기구를 말함

② 금융안정협의회 설치·운영

- 설치 및 운영의 기본원칙

- 감독유관기구들은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며, 이를 구현하는 것을 금융안정협회의 일차적 목적으로 함
- 운영의 기본원칙: 개별 감독유관기구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되, 상호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, 금융시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

- 구성과 위원의 자격

- 협의회는 기재부장관, 한은총재, 금건원장, 금시원장 및 예보사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6인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, 의장은 기재부장관, 부의장은 한은총재
- 비상임위원은 국회가 정당별 의석수 반영 추천한 민간인 중 대통령이 임명, 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감독유관기구 임직원은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

- 운영과 업무지원

-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은 한은이 제공
- 한은은 금융안정 관련 연구·조사업무 수행 위해 상설 연구부서 설치

- 실무협의회

- 법규, 정보공유, 공동검사 및 기타 실무협의회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
- 검사/공동검사 요청, 자료협조 및 정보의 공유

- 감독유관기구는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독기구가 주책임 감독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
- 감독유관기구는 상호간 각자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

- 위기관리

- 협의회는 금융위기 발생시 그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주도적 역할 수행

- 협의회는 금융안정 상태를 위기 단계별로 구분하고, 각 단계별로 감독 유관기구들의 업무를 사전에 정해둘 수 있음
- 협의회는 의장 포함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위기관리단계 진입을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국가 금융위기 선포를 권고

5. 결론

- 본 발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추락하는 금융산업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금융감독의 이해상충 문제 극복을 위한 쌍봉형 체제 도입을 제안
 - 건전성감독기구와 시장감독기구(소비자보호기구) 설계와 업무분담 및 상호관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
 - 아울러 금융감독유관기구들 간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방안 논의
- 금융감독체제는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편시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의 역할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필요

<참고문헌>

- 금융위원회, “「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」 제정안 입법예고, 보도자료, 2016. 6. 27.
- 김홍범, “다시 생각해본 금융감독체계 개편,” 최운열의원실 정책세미나 발표, 2016. 9. 8.
- 배현기, “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,” 2014년도 상반기 예금보험 Workshop, 예금보험공사, 2014. 6.
- 윤석현a, “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,”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자료, 2014. 4. 10.
- 윤석현b, “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,” 『금융소비자연구』, 제4권 제1호, 2014. 8, pp. 7-46.
- 윤석현 · 고동원 · 김상조 · Eunice K. Kim · 원승연 · 전성인, “모델 금융감독

- 법의 구조 -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," 『은행법연구』, 제9권 제1호, 2016. 5, pp. 119-209.
- 윤석현 · 고동원 · 빈기범 · 양채열 · 원승연 · 전성인, "금융감독체계 개편 : 어떻게 할 것인가?" 『금융연구』, 제27권 제3호, 2013. 9, pp. 71-126.
- 전성인, "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·개정에 관한 진술,"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자료, 2014. 4. 10.
- 정홍주, "'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'에 대한 토론," 한국금융소비자학회, 2014. 7. 8
- 정홍주 · 이현복, "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, 책무성, 투명성 강화방안," 『금융소비자연구』 제3권 제2호, 한국금융소비자학회, 2013.

FCA, "The FCA's Approach to Advancing its Objectives," July 2013.

FCA and PRA, MoU: Between the FCA and the PRA, April 2013;
<http://www.bankofengland.co.uk/about/Documents/mous/prastatutory/moufcapra.pdf>

HM Treasury, "A new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: draft secondary legislation," October 2012; www.gov.uk/government/uploads/system/uploads/attachment_data/file/191571/condoc_fin_regulation_draft_secondary_leg.pdf

McCoy, Patricia, "Market Conduct Supervisors and Their Interaction with Prudential Authorities," Presented at the 30th Regulation and Supervision (PROGRES) Seminar, The Geneva Association, Geneva, 24-25 March, 2014.

OECD, "G20 High-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," October 2011.

Thomas, D. and F. Frizon, "Resolving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Financial Businesses: Fundamentals for a Financial Ombudsman," World Bank, January 2012.

World Bank, "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," June 2012; www.worldbank.org

일본의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

李 洪 茂
(早稻田大学)

IAFICO

2016년 11월 5일(토)



금융청과 정책목표

◆ 금융청의 목적

- 금융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·산업의 안정과 활성화,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식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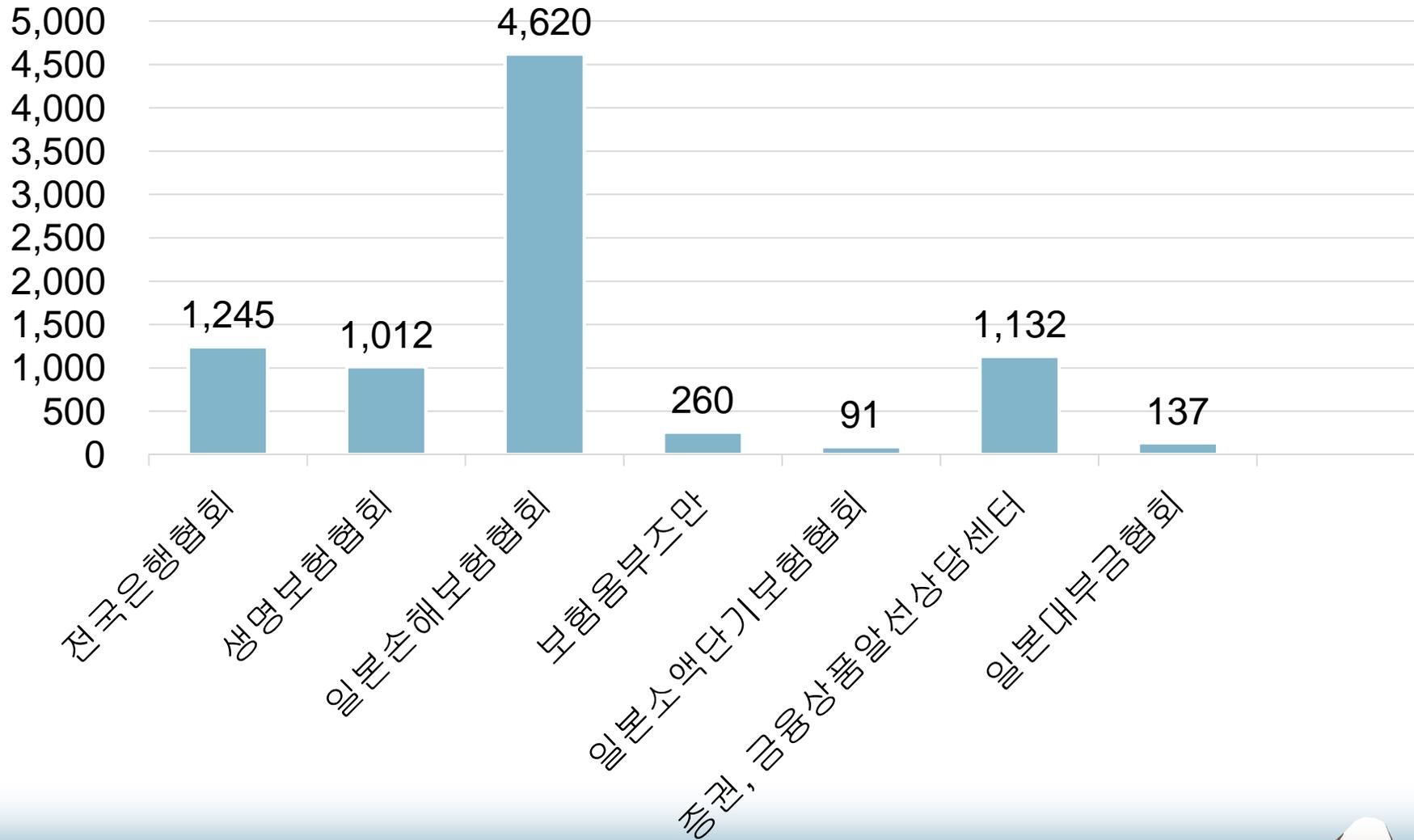
◆ 정책목표

- 「금융시스템의 안정」
- 「이용자 보호·이용자 편익의 향상」
 - 금융청설치법제3조; 「예금자, 보험계약자, 유가증권투자자 그 밖의 이에준하는 자의 보호를 도모」
- 「공정·투명한 시장의 확립」

금융소비자보호

- 행정
 - 금융청
 - 소비자청
- 법제
 - 각 분야별 법률(보험법, 보험업법 등)
 - 금융상품판매법
 - 금융상품거래법
 - 소비자계약법
 - 개인정보보호법
 - 대부금의 금리를 규제하는 법률
- 금융ADR 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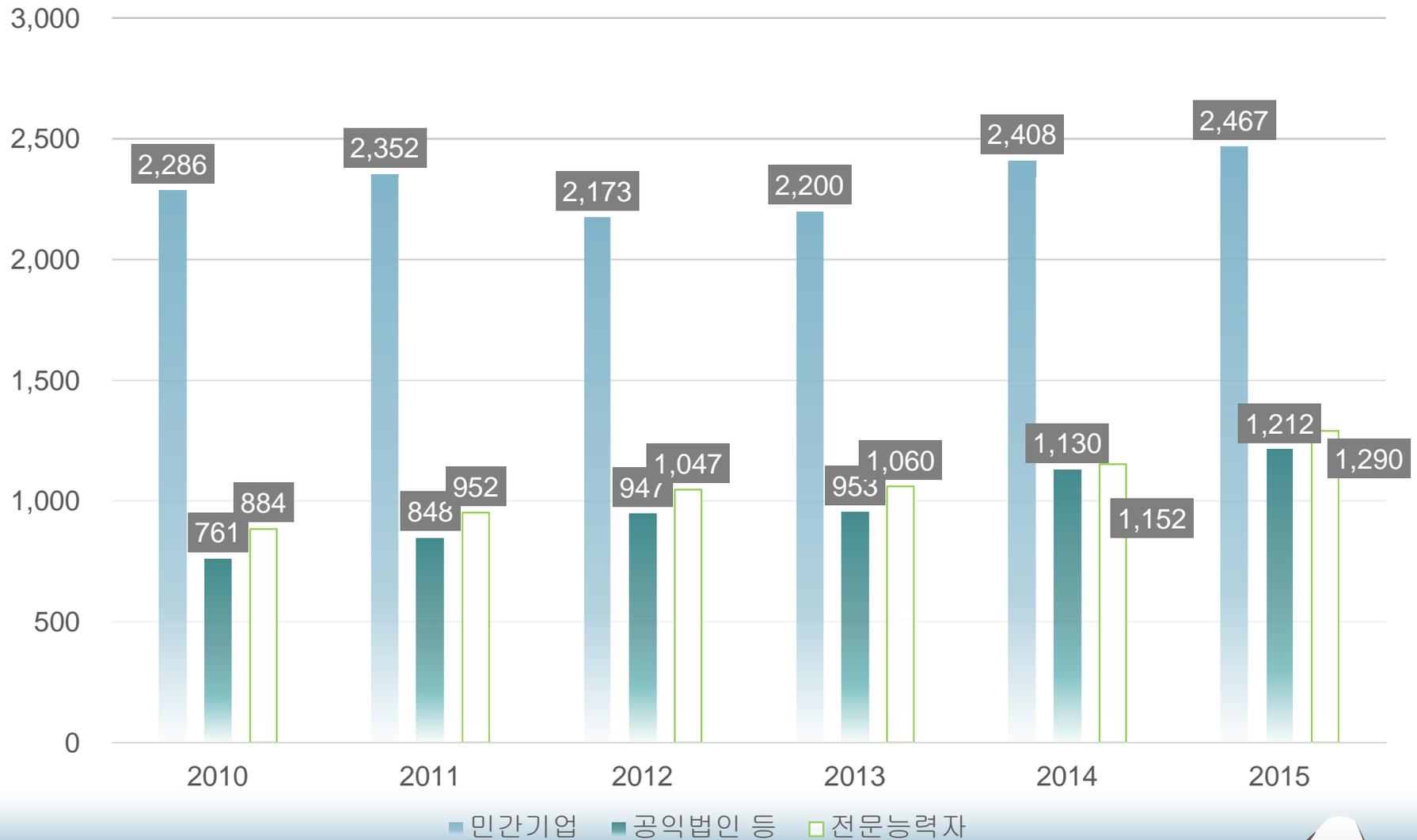
지정분쟁해결기관 고충처리 당기접수 건수(2015년도)(금융청)



금융서비스이용자상담실 상담접수 건수
(2016년4월1일-동년6월30일) (금융청)

구 분	건 수	비 율(%)
예금,용자 등	2,903	31.7
보험상품, 보험제도	2,482	27.1
투자상품, 증권시장제도	2,482	27.1
대부금 등	865	9.4
금융행정일반, 기타	431	4.7
합 계	9,163	100.0

아마아기리「天上がり」 (인원, 전체)(내각인사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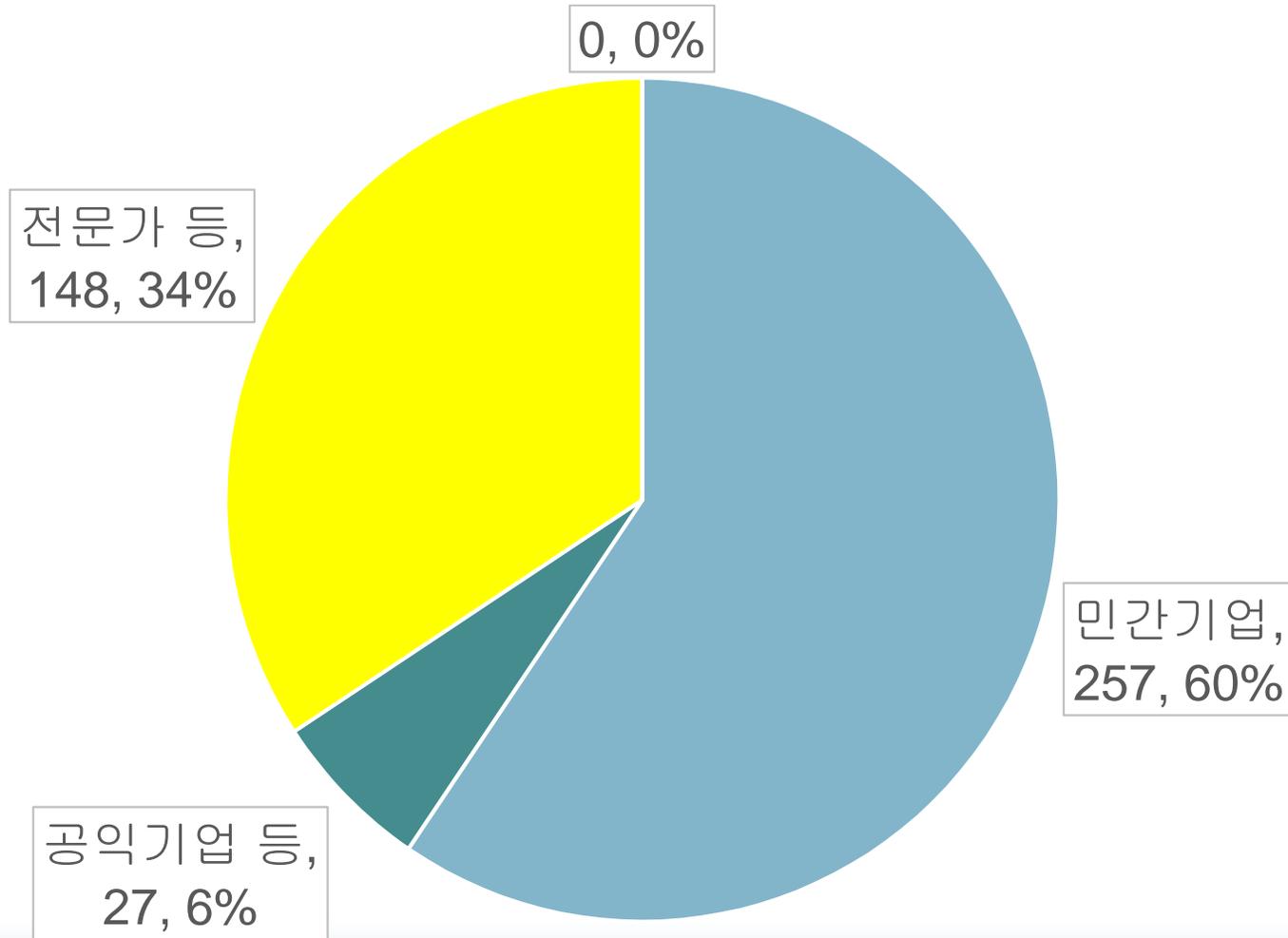
민간기업에서의 상근직원 제도별 채용현황(2015년)

제 도	인 원
일반직의 임기부직원 채용 및 급여특례에 관한 법률	1,356
국가와 민간기업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	418
일반직의 임기부연구원 채용 및 급여특례에 관한 법률	80
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선고채용 등	2,158
경험자 채용시험에 의한 채용	69
계	4,081
비상근직	888

국가와 민간기업의 인사교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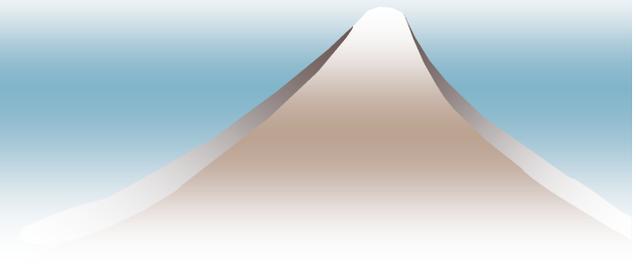
- ◆ 국가가 기업에 파견
 - 신분: 민간기업의 종업원(공무원신분유지)
 - 기간: 3년 이내(최장 5년)
 - 임금: 민간기업이 지급
 - 처우: 연금,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종업원제도의 적용
- ◆ 기업에서 국가채용
 - 신분: 국가이 정규직원(재적파견도가능)
 - 기간: 3년 이내(최장 5년)
 - 임금: 국가가 지급(민간기업이 보충이나 지급은 불가)
 - 처우: 국가공원의 제도 적용

금융청 아마아기리(2015년 10월) (명, %)(내각인사국)



시사

- ◆ 횡단적 규제
 - **ADR**
- ◆ 전문성의 보완



IAFICO 2018 GLOBAL FORUM



早稲田大学

WASEDA University in Japan

Japan



Tokyo



TOKYO SKYTREE



From Haneda Airport to WASEDA University

Route 1: Keihin-Kyuko Line about 1hour



Route2: Limousine Bus about 1hours



From Narita Airport to WASEDA University

**Route 1: JR Narita Express about 1hour
50mins**



Route2: Limousine Bus about 2hours



Facts 2016 of WASEDA University

- **Established 1882**
- **ACADEMIC INSTITUTIONS**
 - **13 Undergraduate Schools**
 - **21 Graduate & Professional Schools**
- **ENROLLMENT**
 - **51,129 Students**
 - **42,860 Undergraduates/8,269 Postgraduates**
- **FACULTY AND STAFF**
 - **Faculty: 5,503 (Full-time: 2,176 Part-time: 3,327)**
 - **Staff: 1,280 (Full-time: 1,144 Part-time: 136)**

WASEDA University students in 1916



WASEDA University(present)



Masaru Ibuka Auditorium,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



Masaru Ibuka Auditorium,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(inside)



Accommodation



Supporting of WASEDA University(joint hosting)

- **The dates(tentative): July 27(Fri.)-28(Sat.),2018**
- **Society Member**
 - **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**
 - **Class room**
 - **Guest house**
 - **After party**
- **Celebrity**
 - **Honorarium**
 - **Hotel**
 - **Meal**
- **Staff**